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일부의 개정된 내용 반영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부패영향 평가결과 조례개선권고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하고,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「정부조직법」개정에 따른 중앙부서 명칭 변경(안 제3조, 제9조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건축제한 규정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 기여(안 제9조제1항)

다. 군 계획시설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.(안 제10조)

라. 개발행위허가 기준(경사도 10°→25°)을 인근 시·군의 허가 기준으로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유치에 기여(안 제15조, 제18조, 제26조)

마.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「도시계획조례」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“도로”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(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기준)하여 부패방지 예방에 기여코자 함(안 제19조제1항)

바.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시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(안 제25조제2항)

사.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제2호 타목을 삭제함으로써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를 보완키 위해 제1호 차목에 특정 대기·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토록 추가하였음. (안 별표19)

아.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완화 (안 제26조)

자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및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,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(안 제21～23조, 제28조, 제46조, 제48조, 제54조, 제57조, 제59조, 제60～61조, 별표 3～10, 별표 12～20, 별표 22～23, 별표 25)

4. 관련법령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음.

□ 조례안 개정이유

○ 본 조례안의 **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이 개정**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

■ **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** 등으로 **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**하여 **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함**으로써 **지역경제를 활성화**하고,

○ 아울러 **현 조례상에 바뀐 법조문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**하여 **효율적인 조례시행**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.

□ 결론적으로

○ 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**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**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**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**

○ **특히,** 본 개정조례는 **복합민원의 조례**이기 때문에 **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**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우리군의 민원 행정이 타 시군보다 **선진화된 민원행정**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참고적으로 특히,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승인 등 후속조치를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